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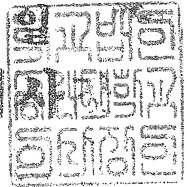
2011 회계연도

# 결산감사보고서

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함

2012년 5월

학교법인송원대학교이



학교법인송원대학교

# 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,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2012. 4. 5부터 2012. 4. 6까지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및 산하 각급 학교(송원대학, 송원유치원)의 2011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2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(결산서)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법인 및 송원대학의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2012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송원유치원의 회계처리도 적정하였습니다.

2012년 4월 6일

학교법인 송원대학교 감사 정무웅 (서명)

감사 전병문 (서명)

피감사자(입회인) 송원대학

행정지원처장

조홍철

(서명) 조홍철

송원유치원

원 장

노민자

(서명) 노민자

법 인

사무처장

정대훈

(서명) 정대훈

